

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35
----------	------

2021년 3월 3일  
교육위원회

**I. 심사경과**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2월 5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
2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9일

3. 상정일자

○ 제29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

(2021년 3월 3일 상정, 원안 가결)

**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최승복 기획조정실장)**

**1. 제안이유**

- 상위법령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용어 및 실효성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화 추진 심의·조정 시 필요한 경우 학생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- 1. 상위법령 제명 및 관련 용어의 명칭을 변경함(안 제2조, 제6조, 제8조)

2. 위원회 회의 시 관계 공무원, 전문가 외 학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정함(안 제12조)
3.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 삭제로 인한 실효성 부재로 삭제함(안 제17조)
  -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제25조(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)가 삭제됨.

### 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35호로 제출되어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9일 개정된 「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」(현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)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정보화정책심의회회의 심의·조정 사항에 대해 학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
#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# 가.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한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상위법령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률과 조례와의 입법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입법으로서,
- 동 개정조례안은 아래의 [표]와 같이 현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의 용어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표]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내역

구분	법률 개정 전	법률 개정 후	조례안 개정사항
제명	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	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	안 제2조 반영
법률 용어	국가정보화 기본계획	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	안 제6조 반영
	인터넷 중독	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	
	지적재산권	지식재산권	
	정보기술	지능정보기술	안 제8조 반영
지식정보관리	「지식정보자원관리법」	「지식정보자원관리법」 폐지	안 제17조 삭제

### 나. 안 제12조에 대한 검토

○ 안 제12조는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외에 학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보장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.

○ 이와 관련해서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호는 교육감이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‘학생, 학부모,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구성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’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<sup>1)</sup>

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 제20조는<sup>2)</sup> 학생이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, 동 조례안 제12조가 ‘학생 등

1) 제4조(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학생, 학부모,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구성원(이하 "교육관계자"라 한다)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
2. 민간과의 협력 체계 마련 및 다양한 의견 수렴
3.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

2)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

제20조(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)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"교육청"이라 한다)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⑤ 교육감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
이해당사자'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동 조례의 목적 및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의 규정과 합치되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생각됩니다(의안 [별첨5]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참고).

**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V. 토론요지 : 없음.**

**VI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**

**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**

**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**

**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**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”을 “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제4호 중 “인터넷 중독”을 “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지적재산권”을 “지식재산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”을 “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 중 “정보기술”을 “지능정보기술”로 한다.

제12조제5항 중 “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”를 “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, 학생 등 이해당사자로부터”로 한다.

제17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과 「전자정부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6조(정보화 기본계획 수립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~ 3. (생략)</p> <p>4. <u>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, 정보격차 해소</u></p> <p>5. 정보보호, 개인정보 보호,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<u>지적재산권의 보호</u></p> <p>6.~ 8. (생략)</p> <p>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<u>국가정보화 기본계획</u> 및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정보화책임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, 다음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 「<u>지능정보화 기본법</u>」----- -----.</p> <p>제6조(정보화 기본계획 수립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지능정보서비스</u> 과의존 -----</p> <p>5.----- -----<u>지식재산권</u>----- ----</p> <p>6.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「<u>지능정보화 기본법</u>」 제6조에 따른 <u>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</u> ----- -----.</p> <p>제8조(정보화책임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

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- 1.~ 2. (생략)
- 3.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
- 4.~ 8. (생략)

제12조(회의 등)

- ①~④ (생략)
- ⑤ 위원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·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- ⑥~⑧ (생략)

제17조(지식정보자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교육관계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보의 무흠결성과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도록 최신 정보로 갱신하여야 하며,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----

- 1.~ 2. (현행과 같음)
- 3. 지능정보기술-----
- 4.~ 8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회의 등)

- ①~④ (현행과 같음)
- ⑤ -----  
-----  
-----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, 학생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---  
-----.

- ⑥~⑧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1.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
2.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
3.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  
용
4.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
5.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 
인 수집,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  
여 필요한 사항